

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0. 10. 12 화순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00. 10. 16

다. 상정일자 : 2000. 10. 16

(제8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회의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사회복지과장 노 양 현

나. 개정사유

○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 완화

다. 주요내용

○ 제6조 제1항 제4호 “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”를 삭제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양정열)

-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완화차원에서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를 보다 완화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써,
- 장학금 지급 목적이 저소득 영세민 자녀에게 학업의 기회를 신장하여 주기 위한것이라고 생각해 볼때, 학비에만 사용도록 강제하는것 보다는 포괄적으로 사용의 범위를 넓혀 주는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되며,
- 개정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 법규의 저촉여부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답변 요지

“생 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 략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의결”

첨 부 :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증개정조례안

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제1항중 세4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지급정지) ①(생략)</p> <p>1.(생 략)</p> <p>2.(“ ”)</p> <p>3.(“ ”)</p> <p>4. <u>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</u></p> <p>5.(생 략)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6조(지급정지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1.(현행과 같음)</p> <p>2.(“ ”)</p> <p>3.(“ ”)</p> <p>4.<u>삭제</u></p> <p>5.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“ ”)</p>